

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(제4조의7제3호 관련)

1. 기술책임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
  - 가.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,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·검사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
  - 나.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,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·검사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
  - 다.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,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·검사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
  - 라.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,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·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
2. 기술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2명 이상
  - 가. 고등학교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,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·검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
  - 나.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,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·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
  - 다.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,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·검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